



이병목 교수 편저 『도서관 법규총람』을 읽고



홍현진*

2005년은 '도서관법'이 제정된 지 42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40여 년간 도서관 문화발전과 그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였던 도서관법의 내용은 항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개정되었으며, 각 계기마다 도서관의 이익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계속 변화되었다.

이러한 때에 이병목 교수의 『도서관 법규총람』이 준비 8년 만에 출간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이 책의 발간이 가지는 그 커다란 의미를. 법은 그 시대의 국가정책과 시대상황, 그리고 사회적 약속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법규총람'은 우리 시대의 문화정책과 교육정책, 나아가 이 시대의 도서관의 현상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모두 포괄한 종합 편찬서일 것이다.

편찬자는 도서관이 문화의 근본이며, 교육의 출발이라는 확신 하에 문화정책의 관

점과 교육정책적 발상으로 도서관법 40년을 추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이 속해있는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련을 포괄하여 제반 법령을 추록하였다.

편찬자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 『도서관법규총람』은 도서관에 관한,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약 200여개의 모든 현행 도서관 관련 법규를 집대성한 총람이며, 동시에 도서관법 40년사를 필두로 도서관법령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도서관법령 관련 주요사항 연표, 도서관법령관계 문헌목록을 총 망라한 도서관법 연구자료의 총람이기도 한 것이다.

이병목 교수의 법규총람 편찬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학들에게 공부하는 자세와 방법을 무언으로, 아니 이 방대하며 치밀한 노작을 통하여 커다란 질책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는 도서관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컨텍스트 속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hjhong@chonnam.ac.kr

그 상세한 내용을 주마간산 격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도서관법의 이론적 기반과 제정경위, 그리고 도서관법의 40년 변천사의 추론이다. 도서관은 사회의 지식·정보 유통을 보장하는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전제 하에, 도서관법은 도서관 정책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규범이며, 도서관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록 즉, 정보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법은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행정의 근간을 제도화하여 도서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를 진작하게 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유통의 효율화를 내세우며 모든 관종을 포함하는 종합 도서관법을 표방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관계법령이 동원되고 있다. 기본법으로서의 도서관법만으로는 국가적 수준의 지식·정보 유통을 최적화하는데 어려움이 노정되어 관계법령과의 역할분담이나 협의조정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서 최근의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입법운동, 문헌유통과 별도로 디지털자원을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과학기술정보유통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지식정보유통조건을 제약하는 '개정 저작권법안' 행정문서보존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듯이, 도서관법은 사회 각 부분의 관련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다원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법총람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서관법 제정 이후 40년간의 과정을 그 의미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단락이 되는 1963년의 최초 '도서관법'은 1987년 전면 개정되기 까지 24년간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근간이 된 법이었다. 당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이 도서관 최초법은 1987년 사회전반적인 민주화 추세를 수용하여 동년에 전면 개정된 법으로서 그 중요내용은 국민의 문화복지적 요구를 수용하여 문화부가 신설된 사실과 그 패를 같이한다.

1987년 당시 문교부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자체 작성한 '도서관법 제5차 개정안'을 참고로 해서 도서관계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의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개정안을 확정하는 바 있는데, 당시 도서관 행정 주무부처인 문교부의 무성익한 도서관정책에 불만을 가진 도서관계는 때마침 신설되는 문화부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에 기대를 걸고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를 회고할 때, 작금의 문화부의 도서관정책의 중앙도서관으로의 이관처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서관정책의 행방의 근본을 질문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출판문화협회의 국민독서진흥법

안과의 절충안으로서 1994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면에 걸친 내막이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어느 것이 국민독서문화창달의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하여 일 것이다.

도서관법의 당면과제를 전망함은 이 책의 당연한 수순이 된다. 우선 국가보조와 도서관정책개선에 대한 제안이다. 도서관에 대한 국가보조는 도서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건물과 장비 위주의 시설지원을 벗어나 봉사기법과 업무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영역에도 지원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도서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인데, 국가도서관 정책추진 체계를 당초 문화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축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다. 나아가 국가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정립의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정부 내 대통령 직속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정보정책에 대한 최고정책기구로서 그 역할을 확립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와 도서관 행정문제는 현대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른 가장 첨예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그 특성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의 문화와 궤적을 같이한다. 여기에는 예산의 문제에서부터 공공도서관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하

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도서관의 행정일원화는 대다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해마다 정부에 건의하는 중요한 건의사항이다.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응 문제도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문제는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96개 정부사업의 민간이양 추진을 발표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이 문제는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주장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가 확산될수록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위탁의 추세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민의 정보서비스 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시장논리가 위탁문제의 중심축을 이룰 것이라는 것과,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자치적 시장질서를 앞세운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추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결국 도서관계는 민간위탁의 실제와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서와 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 도서관봉사 위탁모형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서관은 그 민주적 속성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봉사개선을 우선하여,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기반은 주민의 기대와 적극적인 호응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 이에 부응하는 법이 필요하듯이 도서관법도 새로운 사회와 시대를 반영

하기 위해서 항시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도서관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연구동향을 보면, 일찍이 일본도서관협회가 도서관기본법, 도서관관련법, 각종 도서관기준을 함께 모은 『도서관관계법규기준집』을 1962년에 처음 펴낸 이래 1983년도까지 모두 일곱차례나 새판을 낸 바 있다. 그 후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규기준총람(1992년)』, 『도서관법규기준총람 증보추록편(1995년)』, 『도서관법규기준총람 제2판(2002)』을 계속하여 간행하고 있고,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의 『도서관6법(1979)』, 『도서관 육법 제2판(1990)』을 간행하여 도서관 법치환경을 국가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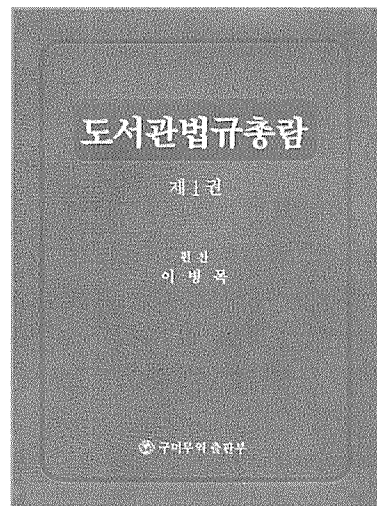
또한 1950년에 일본 최초로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발행된 주요 도서관법 연구서만 7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의 제정경위를 담은 『도서관법성립사자료(1968)』, 도서관법의 의의와 문제점을 다룬 『도서관법연구(1980)』, 도서관법 제정 당시 법안을 기초한 당사자로서 도서관법의 내용을 해설한 『도서관법(1990)』, 도서관법의 정신과 이념에 대한 해설서로서 『도서관법을 읽다(1990)』, 도서관법의 법적 위치와 각 조문의 해설 및 여러 과제를 다룬 『도서관법과 현대의 도서관(2001)』 등의 연구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서관법 연구동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도 크며, 이를 묵묵히 실천하는 이병목 교수의 나이를 초월한 노력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법과 도서관관련법이 연구되기를 기원하는 이병목 교수의 기대는 후학들에 의해서 마땅히 부응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도서관법 40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도서관 학계가 제대로 된 도서관법 연구서가 아직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법의 법적 위치를 위시한 사회교육과 도서관, 교육행정과 도서관, 지방분권과 도서관, 도서관법과 관계법규, 공사립 도서관의 각종 기준과 시설, 보조금관계, 교육 및 문화 기본법과 도서관 등에 관한 정치한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병목 교수의 노작인 법령총람이 나왔으니 그 뒤를 이어 계속적인 도서관법관련 연구서가 나와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계가 한 계단 올라서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 몫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ㄷ



(이병목 편 / 구미무역 / 2005년 9월)